#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

제안연월일 : 2009. 12. 16
제 안 자 : 민경환 의원외

ㅁ 수정 이유
○ 개정되는 조례안 중 조문 명확성과 원활한 시행을 하기 위함.

ㅁ 수정 주요내용
○ 안 제 4 조제 1 항 제 4 호중 "차입금"을 "차입금 및 융자상환금" 으로 한다.
○ 안 제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10.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

○ 안 제 13 조제 4 항제 5 호중 "청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"을 "상공회의소 사무국장"으로 한다.

○ 안 제 15 조제 2 항 중 "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"를 "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"로 한다.

#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안 제4조제항 제4호중 "차입금"을 "차입금 및 융자상환금"으로 한다.
0 안 제 6 조제 1 항제 10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10.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

- 안 제 13 조제 4 항제 5 호중 "청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"을
"상공회의소 사무국장"으로 한다.
○ 안 제 15 조제 2 항 중 "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"를 "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"로 한다.
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

| 헌 행 | 개 정 안 | 수 정 안 |
| :---: | :---: | :---: |
| 1. ~ 2.(생 략) <br> 3. 중소기업중앙회 충 북지회장 <br> 4. 도의회산업경제위원회 <br> 위원 1 인 <br> 5.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<br> 제15조(사후관리) (1)(생 략) <br> (2)도지사 또는 기금관 <br> 리 업무를 위탁받은 <br> 기관 등은 허위에 의 <br> 하여 기금을 지원받거 <br> 나 지원자금을 사업목 <br> 적외에 사용한 자에 <br> 대하여 규칙에 정하는 <br>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<br> 환수 등 필요한 조치 <br> 를 할 수 있다. | 1. ~ 2.(현행과 같음) <br> 3. 중소기업중앙회 충북 <br> 지역본부장 <br> 4. 충청북도의회 신업경제위 <br> 원회 위원 1 명 <br> 5. 청주싱공회의소 시무국장 | 1. ~ 2.(개정안과 같음) <br> 3. (개정안과 같음) <br> 4. (개정안과 같음) <br> 5.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<br> 제15조(시후관리) (1)현행과 같음) <br> (2) $\qquad$ $\qquad$ $\qquad$ $\qquad$ $\qquad$ $\qquad$ $\qquad$ $\qquad$ $\qquad$ 하여야 한다. |

